

#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59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11. 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『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』를 일부 개정하여 안산시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을 정리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자치법규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 주요내용

-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례가 아니므로 상위법령 기재 삭제(안 제1조)
- 안산시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정리(안 제2조)
- 위탁운영의 근거 법령 추가(안 제5조)
- 기타 법적 조문 정비(안 제3조~제4조, 제6조~제10조, 제12조~제16조)

## 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##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【붙임 4】

##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※ 입법예고 : 2024. 9. 20. ~ 2024. 10. 10. 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## [붙임 1]

#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장애인복지법 제58조,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장애인” 을 “장애인” 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과” 를 “다음 각 호와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안산시장애인복지관
2.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
3. 안산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
4. 안산시상록장애인주간이용시설
5.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
6.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

제3조 중 “법” 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” 으로 한다.

제4조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 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 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제2조 각 호 시설의 위탁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

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.

③ 시장은 시설을 위탁운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④ 수탁자의 자격, 선정방법, 위·수탁협약 및 평가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7조”를 “제5조”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제4호의 “제6조에 의한 수익금”을 “수익금”으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주간이용시설의 기능) ① 주간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
1. 이용자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기회 제공
2. 이용자의 자립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및 교육지도
3.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
4. 그 밖에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의 시설의 이용과 퇴소에 관한 사항은 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른다.

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장애인복지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장애인복지과장 안 옥희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장애인시설팀장 강 경아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민서 (행정 2203)

**[붙임 2]**

**신 · 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, 제5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1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자립기반조성 및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장애인-----
제2조(설치)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설치) -----
1. 장애인복지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9조에 의한 시설	--- 다음 각 호와 ---.
가. 안산시장애인복지관(이하 “장애인복지관”이라 한다)	1. 안산시장애인복지관
나.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(이하 “장애인복지관”이라 한다)	
다. 안산시장애인주간·단기보호시설(이하“주간·단기보호시설”이라 한다)	
라. 안산시상록장애인단기보호시설(이하“주간·단기보호시설”이라 한다)	

설”이라 한다)

## 2. 그 밖의 시설

가.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

(이하 “재활작업장”이라 한다)

나.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(이하

“장애인지원센터”라 한다)

<신 설>

제3조(이용대상)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한다.

제4조(이용료 징수 및 사용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자(이

## 2. 안산시장장애인복지관

3. 안산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

4. 안산시장장애인주간이용시설

5.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

6.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

제3조(이용대상) -----  
----- 「장애인복지법」-----  
-----.

제4조(이용료 징수 및 사용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-----  
-----  
-----.

제5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2조 각 호 시설의 위탁은

하 "수탁자"라 한다)를 선정하고  
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  
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위  
탁운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  
서 운영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  
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 
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 
따른다.

③ 시장은 시설을 위탁운영 할  
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 
등을 위탁운영자(이하 "수탁자"  
라 한다)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④ 수탁자의 자격, 선정방법,  
위·수탁협약 및 평가 등 이 조  
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 
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 
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(수탁자 선정) 수탁자의 선정  
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사무의  
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관련  
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조(위·수탁협약) ① 시장은 제6  
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장  
애인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  
한 협약을 체결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  
년으로 하고, 재계약 및 재위탁에  
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  
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「안산  
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 
례」 제8조 규정에서 정한 민간

<삭 제>

<삭 제>

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, 평가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.

제8조(수탁자의 의무)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제9조(위탁협약의 해지)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--- 제7조

3. ~ 4. (생략)

제10조(보고)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제6조에 의한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

5. (생략)

제12조(장애인복지관의 기능)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
1. ~ 8. (생략)

제8조(수탁자의 의무) -----  
각 호-----  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위탁협약의 해지) ① -----  
---각 호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 제5조

3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보고) -----각 호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수익금 -----  
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장애인복지관의 기능) ---  
-----  
-----각 호-----  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주간·단기보호시설의 기능)	제13조(주간이용시설의 기능) ①
<p>주간·단기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</p>	<p>주간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</p>
<p>1.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·연장 보호 또는 30일 이내의 단기보호</p>	<p>1. 이용자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기회 제공</p>
<p>2.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업무</p>	<p>2. 이용자의 자립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및 교육지도</p>
<p>3.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을 위한 업무</p>	<p>3.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</p>
<신 설>	<p>4. 그 밖에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</p>
<신 설>	<p>② 제1항의 시설의 이용과 퇴소에 관한 사항은 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른다.</p>
<p>제14조(입소자격) 주간·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주간·단기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 다만,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삭 제>
<p>제15조(퇴소) 주간·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p>	<삭 제>

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.

1.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자

2. 보호기간의 만료 등으로 연장 보호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자

3. 전염성 질환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4. 그 밖에 주간·단기보호시설내 시설물을 심히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

제16조(재활작업장의 기능) 재활작업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16조(재활작업장의 기능) -----  
-----각호-----  
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#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9-595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12월 4일  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회

## □ 수정이유

- 장애인복지시설의 수탁자에 대한 시장 의사결정 권한과 행위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 법령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함.

## □ 주요골자

- 조 제목 “(보고)”를 “(승인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에게 보고하여야”를 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”로 함.(안 제10조)
- “사회교육과 계몽사업”을 “사회교육”으로 함.(안 제12조)

#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**(보고)**”를 “**(승인)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시장에게 보고하여야**”를 “**시장의 승인을 받아야**”로 한다.

제12조제4호 중 “**사회교육과 계몽사업**”을 “**사회교육**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0조(보고) 수탁자는 다음 <u>각호</u>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 4. <u>제6조에 의한 수익</u> 금 사용에 관한 사항 5. (생략)</p> <p>제12조(장애인복지관의 기능)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<u>각호</u>의 사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	<p>제10조(<u>보고</u>) 수탁자는 다음 <u>각 호</u>의 사항에 대하여 <u>시장에게 보고</u> <u>하여야</u> 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수익금</u> ----- -----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장애인복지관의 기능)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<u>각 호</u>의 사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<u>사회교육</u> <u>과 계몽사업</u> 5. ~ 8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0조(<u>승인</u>) ----- ----- ----- <u>시장의 승인을</u> <u>받아야</u> --.</p> <p>1. ~ 5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2조(장애인복지관의 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. 1. ~ 3. (개정안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사회교육</u> 5. ~ 8. (개정안과 같음)</p>